

p. 30의 12째 줄: (정통 2조 1호 참조) → (정통 2조 1항 1호 참조)

p. 39: “4. 통신판매중개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4. 통신판매중개자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 하고, 통신판매중개자 중에서 통신판매중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라고 표현하여(20조 2항)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로는 옥션, G마켓, 11번가 등을 들 수 있다.

p. 119: “2. 청약철회 등의 제한” 중 “1)” 부분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⑤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거래의 말한다(전상영 21조). [현재 페이지 하단 8~13줄]

p. 125: “V. 콘텐츠계약의 청약철회 등”의 “1. 총 설”에서 다음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제함.

콘텐츠계약의 청약철회 등에 관하여는 콘텐츠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법」 상의 청약철회 등에 대한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p. 150의 21번째 줄: (전소 45조 3항 4호) → (전상 45조 3항 4호)

p. 151의 21번째 줄: 정보통신망을 전송은 →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은

ii 「전자상거래법」(제4판) 추록

p. 191의 7번째 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2조 2항)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2조)

p. 230의 16째 줄: (전상 영 18조
2항, 규칙 11조) → (전상 규칙
11조)

마지막 줄: (전소 18조
1항~5항) → (전상 18조
1항~5항)

p. 235의 10~13째 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위의 사항 외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보유한 정보[공인인증기관(전서 2조^{10호}) 또는 신용
정보회사(신용정보
2조 5호)]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와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전상 20조 2항 전단,
영 25조 1항 후단).

p. 235의 18~21째 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위의 사항 외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보유한 정보(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와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전상 20조 2항 후단,
영 25조 2항 후단).

p. 244의 7째 줄: (전상지침
II. 3. 다.) → (전상지침
II. 4. 다.)

p. 244: “2.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 부분 전부 교체

2.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존

(1)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을 생성
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전금 22조 1항,
29조 2항).

(2) 거래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전금 22조 1항·3항,
29조 2항, 영 12조).

1) 다음의 거래기록은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전금 영 12조 1항 1호, 7조 4항 1호 내지 5호). 다만, 전자금융사업자와 동일한 거래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전금 영 12조 2항).

- ① 거래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전금 영 7조 4항 1호~5호).
 -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 지급인의 출금 동의(전금 15조 1항)에 관한 사항.
- ②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③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의 거래기록은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전금 영 12조 1항 2호).

- ①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②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③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

(3) 거래기록의 보존방법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전거 5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금 22조 3항, 29조 2항, 영 12조 3항).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금 영 12조 4항).

(4)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금융회사 등은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금 영 22조 2항).

- ①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금 51조 2항 6호).

(5) 벌 칙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금 51조 3항 7호, 20조 2항). 또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전금 51조 2항 6호).

p. 264의 11째 줄: (전상 24조 1항 단서, 8조 4항) → (전상 24조 1항, 8조 4항)

p. 273의 17, 24, 26번째 줄: 통신판매중개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p. 299의 11번째 줄: (전소 2조 4호) → (전서 2조 4호)

21번째 줄: (전소 2조 5호) → (전서 2조 5호)

p. 317의 14째 줄:

촉탁인이 그 앞에서 → 촉탁인이 그 앞(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p. 318의 “(3)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뒤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4)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공증 66조 12항).

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공증 66조 12항).

p.329: “(3)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 제목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 22조 1항). 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개인 22조 3항). 위의 규정들에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인 75조 3항 2호).